

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(제110조의2제2항 관련)

1. 교육내용

가. 신규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1) 직업윤리 및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	8시간 이상	•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•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(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) • 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•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• 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• 이륜자동차(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)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
2) 이륜자동차 검사기기	2시간 이상	•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• 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·방법
3) 이륜자동차 검사실무	4시간 이상	• 검사실습(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) 및 행정관리 요령

나. 정기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1)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	4시간 이상	•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(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) • 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•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• 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• 이륜자동차(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)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
2) 이륜자동차	1시간 이상	•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• 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

검사기기		리 절차 및 방법
3) 이륜자동차 검사실무	2시간 이상	· 검사실습(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) 및 행정관리 요령

다. 임시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이륜자동차 관련 법령	4시간 이상	· 법령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

2. 교육방법

교육과목	교육방법
가. 직업윤리	이론 교육
나.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	
다. 이륜자동차 검사기기	이론 및 실습 교육
라. 이륜자동차 검사실무	

비고

1. 신규교육의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 교육이 50% 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.
2.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, 정기교육 및 임시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.
3. 임시교육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출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.